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14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 한준호 • 박상혁 • 전현희

허종식 • 이연희 • 이건태

민홍철 · 강유정 · 한민수

박용갑 • 조승래 • 김민석

민형배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은 일반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수월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함.

현행법 제176조 중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해당 조항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 제201조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와 과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은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176조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로, 제201조는 "과실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언어생활과 어문 규범에 맞지 않은 점을 개선하고 법률의 의미를 명확하게하려는 것임(안 제176조 및 제201조제2항).

법률 제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20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果實)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 거나 과실(過失)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第176條(押留, 假押留, 假處分斗 時效中斷) 押留, 假押留 및 假 處分은 時效의 利益을 받은 者 에 對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通知한 後가 아니 면 時效中斷의 效力이 없다.

第201條(占有者와 果實) ① (생략)

② 惡意의 占有者는 收取한 果實을 返還하여야 하며 消費하였거나 過失로 因하여 毀損 또는 收取하지 못한 境遇에는 그果實의 代價를 補償하여야 한다.

③ (생략)

개 정 안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 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 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 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第201條(占有者와 果實) ① (현행 과 같음)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果實)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過失)로 인하여 수취하지 못하거나 훼손한경우에는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